

#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곽향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70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곽향기, 김경훈, 김길영,  
김영철, 김용일, 김지향,  
김춘곤, 김형재, 김혜영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성연,  
박춘선, 신동원, 윤기섭,  
윤영희, 이병윤, 이봉준,  
이숙자, 이영실, 이은림,  
이희원, 임춘대, 정준호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, 시민 참여 유도과 확대를 위해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(안 제7조제3항).
- 나.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,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(안 제7조제4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실적, 횟수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,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지원사업)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# 가. 대상

- 제7조(지원사업)제3항

##### 나. 전제

- 제7조(지원사업)제3항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#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##### 라. 방법

- 서울시 담당 부서 문의 등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1,500,000천원(연평균 30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7조(지원사업)제3항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소계(a)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수입	-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
※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제공자료 활용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 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  
 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  
 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지혜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☎ 02-2180-7953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지원사업)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총비용(합계) ≍ 1,500,000천원(연평균 300,000천원)  
 = 300,000천원 × 5년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7조(지원사업)제3항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소계(a)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수입	-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
※ 비용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제공자료 활용